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7일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이종숙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3.6.2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종숙 의원)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입간판 설치 구역(도로, 도로 외)의 구분을 없애고 벽보, 전단의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 금액에 차등을 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6)

나.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의 부과금액을 가중하여 명시함(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협조부서: 도시디자인과

다. 입법예고(2023. 5. 31. ~ 6. 8.)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개정 취지

○ 안 별표6(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별표6(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1차·2차·3차)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 이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단, 가중 과태료 부과처분은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는 바 홍보와 계도 활동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참 고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

※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1차·2차·3차)관련 개정 현황

연번	자치구	조례명	개정일
1	은평구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22.04.07.
2	관악구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22.05.12.
3	동작구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22.07.14.
4	강남구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22.10.14.
5	노원구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2022.10.27.
6	광진구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22.12.27.
7	도봉구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2022.12.29.
8	성북구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22.12.30.
9	금천구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	2022.12.30.
10	양천구	금천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23.04.20.

붙 임 **[별첨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6]

과태료 부과 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개당 14만원
▪연면적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개당 24만원
▪연면적 0.9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개당 34만원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개당 44만원
▪연면적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개당 54만원
▪연면적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개당 64만원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개당 85만원
▪연면적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개당 110만원
▪연면적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개당 129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개당 130만원+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한 금액 이하
(2) 도로 외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개당 10만원
▪연면적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개당 12만원
▪연면적 0.9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개당 14만원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개당 29만원
▪연면적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개당 39만원
▪연면적 1.7제곱미터 이상	개당 49만원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 제3호)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1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개당14만원	개당18만원	개당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개당49만원	개당64만원	개당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개당80만원	개당105만원	개당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개당80만원+8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105만원+10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135만원+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장당14만원	장당18만원	장당23만원
나) 면적 3㎡ 초과		장당33만원	장당42만원	장당55만원

2.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개당 59만원
▪연면적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개당 69만원
▪연면적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개당 79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개당 80만원+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 가산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장당 13만원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장당 33만원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장당 78만원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장당 80만원+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한 금액 이하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5만원
(2) 법 제5조제2항에 위반되는 광고내용	장당 5만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5만원
(2) 법 제5조제2항에 위반되는 광고내용	장당 5만원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2. 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장당80만원	장당105만원	장당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1㎡당		장당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장당 5만원	장 당 6만원	장당 8만원
4) 전단		장당 5만원	장 당 6만원	장당 8만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법 제20조제1항 제2호	70만원 120만원 220만원 400만원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7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20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20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4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붙 임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1호, 2022. 3. 8., 일부개정]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2. 1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장당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0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3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
4)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